

1. 개정이유

한·중, 한·일, 한·중·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총괄·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6.16. ~ 6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1.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(존속기한: 2020년 7월 10일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7월 10일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